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협의요청권(계약해지권)
부여〉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10호)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6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개 요	1
1.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110호)	1
2.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260호)	3
II . 검토의견	4

I. 개 요

1. 오세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110호)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11.
- (3) 회 부 일 : 2025. 11. 12.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2.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260호)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11. 14.
- (3) 회 부 일 : 2025. 11. 17.

2)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영업 부진이 지속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오세회의원안 제14조의 2 신설 등, 이강일의원안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오세회의원안	이강일의원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 13. (생략) ③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13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에 대한 사항</u> 8.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 -----	

현행	오세희의원안	이강일의원안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 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 ----- ----- ----- ----- ----- ----- ----- ----- -----제14조의3에----- ----- ----- -----.	
②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 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 -----제14조의3에----- ----- ----- ----- ----- -----.	

현행	오세희의원안	이강일의원안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협의 요청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상권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적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 ①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게 된 경우 2.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해당 상권이 급격히 위축된 경우 3.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매출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게 된 경우 4.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

현행	오세희의원안	이장일의원안
		<u>속하기 어려운 경우</u> 5. <u>그 밖에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u> ② <u>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u> ③ <u>제1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인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생략)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3조(시정조치) ① -----	

현행	오세희의원안	이강일의원안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 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 ----- ----- ----- -----제14조의3 <u>제5항</u> ----- ----- ----- ----- ----- ----- ----- ----- ----- ----- ----- -----.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	제35조(과징금) ① --	

[illegible]

현행	오세희의원안	이강일의원안
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5억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상법」 제168조의10¹⁾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현행법²⁾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로서 가맹점사업자의 파산 등³⁾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

1)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
 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두 개정안 모두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영업 부진이 지속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및 방식, 위약금 감면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오세희의원안은 상권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상당기간 누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 및 해지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이강일의원안은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해당 상권이 급격히 위축된 경우, ③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매출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④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⑤ 그 밖에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도 「상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상당한 기간 등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변화로 인한 영업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폐업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2025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로 상권급변으로 인한 매출 부진(37.6%)이,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3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⁴⁾

□ 다만, 계약의 해지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원은 계속적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한 사정변경, 예견 불가능, 계약 유지의 부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⁵⁾

4)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12. 30.)

□ (중도해지 고려율) 가맹점주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남

- ‘패스트푸드(53.0%)’, ‘편의점(51.2%)’, ‘기타 외식(49.4%)’ 업종에서 높게 나타남
-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가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가맹점 수 100개 미만: 41.4% / 가맹점 수 100개 이상~300개 미만: 42.0% / 가맹점 수 300개 이상~1,000개 미만: 38.4%
-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복수 응답)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31.3%)’,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12.9%)’ 순으로 나타남
- * 상권급변으로 인한 매출 부진(37.6%) / 상권과 무관한 매출 부진(36.9%)
-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는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투자금 회수 및 기존 재고 처리 부담(5.8%)’ 순으로 나타남
- *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34.8%) / 상가 임대계약 위약금 부담(25.8%)

5)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

- 또한, 오세희의원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강일의원안은 가맹본부가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모두 가맹본부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⁶⁾

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 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계약해지가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해지권(또는 계약해지 협의요청권) 부여, 그 인정 범위는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위약금·손해배상청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큰 바, 위약금 감면 여부와 그 기준, 구체적인 위약금 감면 방식도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⁷⁾

문 의 처

02)6788-5114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7)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